

발간등록번호

11-1480000-100084-01

「화학물질관리법」(‘25.8.7 시행) 반영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주요 질의 및 답변

2025. 9.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5.8.7. 시행)
주요 질의 및 답변

1. 주요 개정사항	3
2. 개정 이유 및 세부내용	7
3. 주요 Q&A	13
1 영업허가	13
1-1. 허가·제한·금지물질 허가 등(질의 1~2)	14
1-2. 영업허가 등 체계 개편(질의 3~8)	16
1-3. 영업자 준수사항 등(질의 9~11)	22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질의 12~13)	24
2 검사/진단	25
2-1.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질의 1~4)	26
2-2.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질의 5~8)	29
2-3.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질의 9~18)	31
2-4. 기타 사항(질의 19~25)	38
3 기타(취급기준, 배출저감계획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등)	49
3-1. 취급기준(질의 1~2)	50
3-2. 배출저감계획서(질의 3~5)	52
3-3. 사고대비물질(질의 6~7)	55
3-4. 규정수량(질의 8~9)	57
3-5. 그 외 사항(질의 10~13)	58





1. 주요 개정사항





1. 주요 개정사항

- **(영업허가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 등으로 사업장 관리 합리화(영업신고의 세부절차 등 신설 포함)

[기존] 모든 사업장이 영업허가 대상(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취급량 고려)

[개정] 하위규정수량 이상 → 허가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 하위규정수량 미만 → 신고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등 → 비대상

- **(시설관리)**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를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화*** 및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정기검사 주기 1년 연장)

***[기존]** 정기검사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에 따라 4, 8, 12년 마다 실시

[개정] 정기검사 사업장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1~4년 주기, 안전진단 4번째 정기검사 시기에 실시 (화관서 면제인 하위규정수량 미만은 진단 면제)

** (필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 정기검사 결과가 적합한 사업장
(선택) ① 3년간 화관법 위반이 없는 사업장, ② 배출저감계획서 성실 이행 사업장



- **(금지·제한·허가물질)** 전량 수출하는 금지·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의 제한 용도 외 취급 신고에 대한 세부절차 등 마련

[기존] 제한물질 : 제한된 용도→ 취급금지, 제한된 용도 外→ 허가

[개정] 제한된 용도→ 제조·수입허가(전량수출 시), 제한된 용도 外→ 신고

- **(국내대리인 제도)** 국내 수입자의 화관법 의무(화학물질 확인, 허가물질 허가 신청)를 대행하는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신고 절차 등 마련
- **(소비자특례)** 법 상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대상으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등 신설
- **(배출저감계획서)** 계획서 재제출(부적합 시) 및 변경 제출 근거 마련, 저감계획 수립·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신설



2. 개정 이유 및 세부내용



2. 개정 이유 및 세부내용

[시행령]

개정 이유

-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일부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내용

-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 위원회'를 추가함
-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 물질 등에 대하여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의 국내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시 부여 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2. 개정 이유 및 세부내용

[시행규칙]

개정 이유

-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려는 경우 및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 등(제5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수정·보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검토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 신고(제14조의2 신설)**
 -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제1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대상(제21조의2제1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에 사고대비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온 시설을 추가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2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및 그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 정기검사 결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그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받도록 하고, 화학사고 발생요인이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제27조제7항 신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정함



2. 개정 이유 및 세부내용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제31조의3)**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 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내대리인 선임 요건(제52조의3 신설)**
 -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가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선임받을 업무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정함

3. 주요 Q&A

1 영업허가





1 영업허가

1-1. 허가·제한·금지물질 허가 등

질의 1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달라진 사항이 있나요?

답변 1 <허가물질>

- 허가물질을 아래의 경우 신고 후 취급하실 수 있습니다.
 -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 3)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법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9조의2)

<제한물질>

-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안되지만, 국외에서는 해당 용도로 취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된 용도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법 제18조제2항)
- 아울러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에 근거하여 신고 후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등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금지물질>

-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제1항)



1-1. 허가·제한·금지물질 허가 등

질의 2 제한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취급(운반은 제외)할 경우는 제한물질 신고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2**
-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운반은 제외)하는 경우는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18조제5항에 따른 제한물질 취급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시행령 제8조의2(제한물질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
 - 다만, 제한물질로만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취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접속 후 고유번호로 검색하여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인체등유해성물질 및 제한물질로의 지정여부 확인 가능
 -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운반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는 비대상이지만 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는 대상입니다. 또한 법 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면제 사업장의 경우와 법 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경우 제한물질 신고도 면제됩니다.



1 영업허가

1-2. 영업허가 등 체계 개편

질의 3 개정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혹은 영업허가 면제)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3 • 개정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혹은 영업허가 면제)를 받았더라도 영업허가의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은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하셨다면, 규정수량의 어느 구간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관법민원24 접속 후 [마이페이지-화관법관리수준 확인-사업장 정보 입력 후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허가) 하위규정수량 이상

(신고)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 하위규정수량 미만

(비대상)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① (개정前)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 (개정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 변동 없음

② (개정前)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 (개정後)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자

- 「화학물질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시, 사업장에서 관할 청에 요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영업신고증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증 발급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로) 화관법민원24 > 영업허가(신고) > 기타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증(허가→신고 전환) 발급 신청서” 및 첨부파일란에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사업장임을 증빙하는 자료 예시) 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지1]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자료도 가능), ②장치설비목록, ③유해화학물질목록 등



- 단, 기존 영업허가증에 기입되지 않았으나 법정 서식 개정에 따라 신규로 기입해야하는 1)최대보유량 합계, 2)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는 영업신고로 전환한 이후 사업장에서 신고증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개정前)판매업 영업허가자 중 취급시설이 없는 영업자 → (개정後)법29조의3에 따른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영업 신고 사업장의 경우 기술인력 선임의 의무가 없으며(시행규칙 제27조제8항),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1명을 선임(시행규칙 별표 6의2)하시면 됩니다.

③ (개정前)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 (개정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자

- 영업허가자가 영업허가 등 비대상(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취급자)· 면제(법 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대상이 된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로) 화관법민원24 > 영업허가(신고) > 기타 > “유해화학물질 영업면제 신고서” 및 첨부파일란에 증빙자료* 제출

* (면제 사업장임을 증빙하는 자료 예시) 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1]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자료도 가능), ②장치 설비목록, ③유해화학물질목록 등



1 영업허가

1-2. 영업허가 등 체계 개편

질의 4 사업장 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여러 가지(예: 유해화학물질 A, B, C)입니다.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구간이 각각 다른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나요?

답변 4 •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허가신청서 <유해화학물질>란에 표시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유해화학물질 A (하위규정수량 이상/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 B (최하위규정수량 이상~하위규정수량 미만/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 C (최하위규정수량 미만/허가 등 비대상)

상기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식 내 유해화학물질 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일자	유해화학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용도	최대보유량(톤)	취급시설 보유 여부	대상 구분(허가/신고/면제)	확인
	A						허가	
	B						신고	
	C						면제	



1-2. 영업허가 등 체계 개편

질의 5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을 하고 싶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5**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개정 전에는 영업허가(판매업)로 관리를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법 제29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취급시설이 없어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신고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관할 청에 요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영업 신고증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증 발급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경로) 화관법민원24 > 영업허가(신고) > 기타 >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증(허가→신고 전환) 발급 신청서” 및 첨부파일란에 증빙자료* 제출
 - * (증빙자료 예시) 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1]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자료도 가능), ②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 다만, 사업장 내 판매업이 아닌 다른 영업허가(또는 취급시설)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아울러,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2호)



1 영업허가

1-2. 영업허가 등 체계 개편

질의 6 법 28조에 따른 영업신고도 다른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등을 적용 받나요?

답변 6

- 다른 법령에 의한 입지 등의 제한은 화학물질관리법이 아닌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업허가 신청자나 신고자의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별 법률의 준수 사항과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 신고 대상 사업장 또한 신고를 수리하기 전 다른 법령에 의한 입지 등의 제한이 있는지 검토·확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질의 7 영업허가 및 신고 사업장이 어떤 경우에 변경허가 혹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7

- 영업허가 사업장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영업신고 사업장은 변경신고만 가능합니다.(변경허가는 불가능)
-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대상으로는
 - 가.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
 - 나.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

* 허가를 받고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 기준이 아닌 허가 시점부터 누적된 양을 기준으로 함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 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운반업, 시범생산은 제외)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허가의 변경신고 대상으로는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 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하위규정 수량 미만인 경우(운반업 제외)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29조제1항2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신고의 변경신고 대상으로는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

다.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 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하위규정 수량 미만인 경우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3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호 다목, 2호 바목의 취급량은 최대보유량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영업신고 사업장에서 하위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새롭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허가

1-2. 영업허가 등 체계 개편

질의 8 2025.8.7 개정 이전부터 사용하던 설비에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경과조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8 • 법 시행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에 한하여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1-3.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질의 9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자도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9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제1항6호에 따라 영업신고자도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1-3.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질의 10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해임·퇴직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10**
- 영업허가자는 선임·해임·퇴직의 경우 각각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32조제3항)
 - 영업신고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재선임, 퇴직, 해임 등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으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영업신고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재)선임을 신고할 경우 전임자에 대한 해임·퇴직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 11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몇 명 선임하여야 하나요?

- 답변 11**
-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한 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 법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6의2])
 - 다만, 시약판매업은 유해화학물질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취급시설 없는 시약판매업의 경우에도 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1 영업허가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질의 12 영업신고 사업장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답변 12 • 영업신고 사업장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 13 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담당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답변 13 • 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도 법 시행 이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6의3])

• 시약판매업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로서 매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와 동일하게 시행규칙 [별표 6의3] 비고 2의2.를 적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Q&A

2 검사/진단





2 검사/진단

2-1.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

질의 1 매년 9월에 정기검사를 받던 사업장인데, 법 개정 후 정기검사 주기가 2년으로 바뀌게 된다면, 차기 정기검사는 2025년에 받아야 하나요? 2026년에 받아야 하나요?

답변 1

- 사업장 내의 여러시설 중 최초로 검사받은 시설의 검사기준일을 사업장의 검사기준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검사기준일이 9월 이고 24년 9월에 검사기준일 전후 30일내에서 최초로 검사받은 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 후 검사를 받았다면, 다음 정기검사일은 26년 9월입니다.

질의 2 법 개정으로 정기검사 주기가 매년 → 2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기준일이 법 시행일('25.8.7) 이후인데, 직전 정기검사가 '24년이라면 다음 정기검사는 '25년(+1)'이 아닌 '26년(+2)'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2

- 개정된 주기는 차기 정기검사 시기가 법 시행일('25.8.7) 이후인 취급시설 부터 적용됩니다.
 - 질의내용상 검사기준일이 법 시행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주기(2년)가 바로 적용되며, 25년이 아닌 26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1.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

질의 3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장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미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어느 대상에 해당되어 몇 년마다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을 수행하면 되나요?

- 답변 3**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911호, 2021. 4. 1.) 제4호를 준용하여 장외영향평가서 고, 중, 저 위험도를 각각 가, 나, 다 위험도로 간주하여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을 수행하면 됩니다.
 - '25년 8월 7일' 이후부터 사업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안전진단 신청시기 도래여부 관계없이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2 검사/진단

2-1.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

질의 4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 차량운송시설(탱크로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1군-나)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는 2년이며, 차량운송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1년으로 확인됩니다. 제조·사용시설과 저장시설은 2년 주기로, 차량운송시설은 매년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할까요?

답변 4 · 각 취급시설별 정기검사 주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질의하신 내용처럼 각 시설별로 정기검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시설 (2년 주기) / 차량운송시설 (1년 주기)

〈차량운송·운반시설 구분〉

유형	정의	주요차량			
차량운송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탱크로리			
차량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트랙터	 트레일러	 카고트럭	 윙바디 트럭



2-2.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

질의 5 '20년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고'를 받아 '24년에 안전진단을 수검받았고, 법 시행 이후 정기검사 주기는 3년(당초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5 • 안전진단 수행 이후 네번째 정기검사 시기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6 '16년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중'을 받아 '24년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였으나, 검사기관 사정으로 인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정기검사 주기는 3년(당초 1년)으로 변경되었는데, 다음 안전진단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6 • 종전 안전진단 주기(8년)를 적용해 32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기검사와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전진단을 차기 정기검사일자로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제2항)

(예시)

- 2군 중위험도(나위험도) 사업장장평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 : '16년 4월
- 종전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시기 : '24년 4월, '32년 4월
- 사업장 최초검사일 : '16년 5월
- 법 개정 이후 정기검사 : '28년 5월('25+3년 5월), '31년 5월, '34년 5월
- 정기검사일과 종전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일 불일치
⇒ '34년 5월에 안전진단 실시

2 검사/진단

2-2.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

질의 7 '18년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중'을 받아 당초 안전진단 주기는 '26년이었으나, '20년에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고'로 상향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신청 시기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7

- 변경 이전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와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실시한 이후부터는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위험도에 따른 안전진단 시기('26년)보다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안전진단 시기('24년)가 더 먼저 도래하므로, '24년에 신청 및 이후 변경된 주기(4년)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8 '19년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고'를 받아 '23년에 안전진단을 수검받았고, '24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위험도 '나'를 받았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8

-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 안전 진단일로부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직전 안전진단일 기준('23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 위험도(나, 8년)를 적용하므로, 다음 안전진단 신청시기는 '31년입니다.



2-3.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

질의 9 '20년 장외영향평가서 '고' 위험도를 받아, '24년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검사 기관과 진단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위규정수량 미만 사업장 인데, '24년 신청 건은 정상적으로 수검받고 다음 안전진단부터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걸까요?

답변 9 • '25년 8월 7일' 이후부터 사업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안전진단 신청시기 도래여부 관계없이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질의 10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설비와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가 모두 존재하지만, 공정상 별도로 운영된다면,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설비는 설치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0 • 시설별로 최하위규정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유해 화학물질이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이어야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단위로 면제여부 판단)
- 일부 시설 또는 일부 물질만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검사/진단

2-3.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

질의 11 1군 가 위험도 사업장에서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이 신설 되는 경우 검사 면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1군 가 위험도 사업장 기준에 맞게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11 •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과 비교하는 대상인 최대보유량은 취급시설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는 것으로 1군 가 사업장 내에서 소규모 시설이 신설 시 해당 시설도 1군 가의 주기로 검사대상이 됩니다

▶ 최대보유량 산정 예시

시설 구분	설비명	물질명	최종 함량 (%)	설계용량 (m³)	비중	최대 보유량(톤)	비고
제조·사용	R-1	황산	5	5	1.01	0	기준함량 미만 (비유해)
		질산	20		1.02	5.1	
	R-2	염산	15	10	1.01	10.1	
저장	TK-01	염산	35	20	1.02	20.4	
보관 시설	보관 창고	황산	98	-	-	1	
		질산	98	-	-	2	

☞ 최대보유량 : 황산(1톤), 질산(7.1톤), 염산(30.5톤)



2-3.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

질의 12 당사는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사업장으로, 법 개정 이후 정기검사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기준일(7월 2일)이 도래하여 '25년 정기검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 검사까지는 정상적으로 수검받고 다음 정기검사부터 면제 되는건가요?

- 답변 12**
- 정기검사 면제는 법 개정시점('25.8.7.')에 즉시 적용되므로, 이전에 신청한 정기검사 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면제 됩니다.
 - 다만,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도 화학사고 등 발생 시 수시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검사/진단

2-3.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

질의 13 사용시설, 저장시설, 탱크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최대보유량이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인데, 차량시설은 최대보유량 산정에서 제외되다보니, 차량 시설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3

- 차량시설은 별도로 3년 이내의 주기를 적용받습니다.
1년 : 불산, 황산, 염산, 브롬화수소 운송시설
2년 : 1년 대상 물질 외 금속부식성물질 운송시설
3년 : 그 외 물질에 대한 운송시설과 운반시설

▶ 차량시설 정기검사 주기

구분	운반·운송물질	검사주기
차량 운송시설	염화 수소, 황산, 브롬화 수소, 플루오르화 수소	1년
	금속부식성 물질	2년
	그 외 물질	3년
차량 운반시설	-	3년



2-3.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

질의 14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 차량운송시설(탱크로리)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으로 법 개정 후에도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차량운송시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신청 시 차량운송시설은 제외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14 • 차량운반 및 운송시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15 인체만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은 정기검사가 면제되는데, 인체만성이면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도 정기검사가 면제되나요?

답변 15 • 물질이 인체만성물질이면서 동시에 사고대비물질 또는 인체급성·생태 유해성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검사 면제대상이 아니며, 인체만성물질로만 분류되는 경우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2 검사/진단

2-3.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

질의 16 사업장 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취급시설(인체급성 시설)과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취급시설(인체만성 시설)이 있는데, 인체만성 시설만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여러개의 설비를 묶어 하나의 제조·사용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조·사용시설이 급성 취급설비 5개, 만성 취급설비 3개로 구분된다고 하면, 3개의 만성 취급설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16 · 인체만성물질 정기검사 면제는 시설(혹은 설비)단위로 적용되어, 사업장 내 인체급성물질 취급시설이 존재하더라도, 인체만성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만성물질만 취급하는 개별설비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2-3.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

질의 17 보관시설 내 급성, 만성, 생태유해성 물질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성 물질은 정기검사에서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17

- 만성 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설비)가 정기검사에서 면제되는 것이지만 만성 물질을 제외하여 신청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만성물질 또한 사업장 최대보유량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① 만성물질만 취급하는 개별설비는 정기검사 면제(붉은색)

② 설비 내 만성물질 외 유해화학물질 포함 시 정기검사 대상(노란색)

시설구분	시설명	설비명	물질명	투입 함량 (%)	물질 구분	정기검사
제조 · 사용	도금공정	도금조1	붕산	30	만성	대상
			질산	20	급성/사고대비	
	도금조2	붕산	50	만성	면제	
	합성공정	R2	스티렌	80	만성/사고대비	대상
저장	벤젠 저장탱크	TK-01	벤젠	80	만성	면제

질의 18 기존에 정기검사 받던 여러시설 중에 사용하는 물질이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해당되는 취급시설인 경우 선별적으로 정기검사 면제로 보면 될까요?

답변 18

-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경우 설비 단위로 정기검사 면제를 적용 받습니다.



2 검사/진단

2-4. 기타 사항(정기검사 기간 연장제도, 검사기준일, 검사·진단 신청단위 등)

질의 19 당사는 정기검사 3년 주기 사업장입니다. 직전 정기검사일과 직전 검사기준일 중 어디서부터 3년을 적용하면 될까요?

답변 19 • 직전 정기검사일이 아닌 직전 검사 기준일로부터 개정된 주기를 적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20 일부 시설은 법 시행일(2025.8.7) 이전에 이미 검사를 받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5년 9월' 중 신청할 예정인데, 이미 검사를 받은 시설까지 포함해서 신청해야 되나요?

답변 20 • 이미 25년도 검사기준일이 도래하여 정기검사를 완료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4. 기타 사항(정기검사 기간 연장제도, 검사기준일, 검사·진단 신청단위 등)

질의 21 A시설 설치검사('2016년 7월'), B시설 설치검사('17년 1월')인 경우 사업장 단위 검사기준일은 7월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최초로 검사 받은 A시설을 도중에 폐쇄하는 경우, 검사기준일(7월)이 그 다음 설치한 시설인 B시설 기준(1월)으로 변경 되나요?

답변 21 · 시설을 도중에 폐쇄하더라도, 사업장의 검사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가장 최초로 받은 검사를 기준으로 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검사/진단

2-4. 기타 사항(정기검사 기간 연장제도, 검사기준일, 검사·진단 신청단위 등)

질의 22 법 개정 후부터는 취급시설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 기준일이 각각 다른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예시) A시설 검사 기준일(8월), B시설 검사기준일(3월)

답변 22 · 가장 최초로 검사를 받은 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에 맞춰서 모든 시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사 신청단위 및 신청시기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25.8.7 이전)	개정 후 (‘25.8.7. 이후)
신청단위	취급시설 단위	사업장 단위 ¹⁾
신청시기 ²⁾	취급시설별 검사기준일에 맞춰 신청 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을 함께 신청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

1) 단위공장 단위 가능(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으로 운영단위가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과 협의를 거친경우로 한정)

2) 사업장 각 검사시설마다 검사 기준일이 다른 경우

▶ 정기검사 신청 시점(시설별 검사 기준일 상이 시)





2 검사/진단

2-4. 기타 사항(정기검사 기간 연장제도, 검사기준일, 검사·진단 신청단위 등)

질의 25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적용 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단위의 최대보유량과 화학사고예방관리서 제출단위의 최대보유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기를 적용해야 할까요?

답변 25 · 영업허가의 범위에서 사업장을 설정하고 검사 신청 등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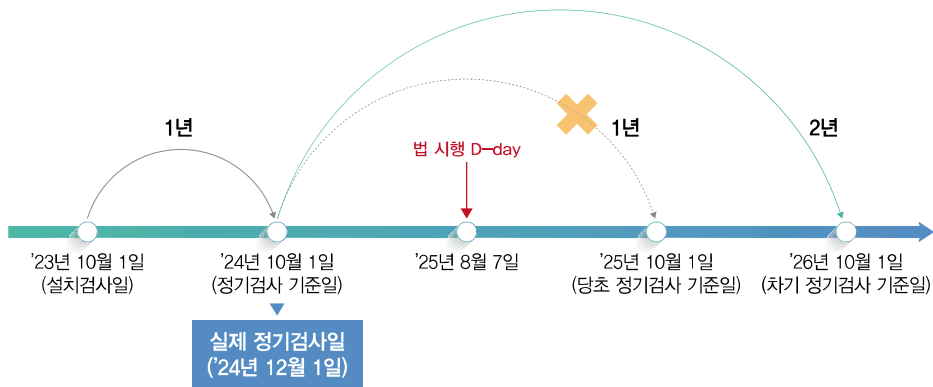


참고

정기검사 개정주기 적용시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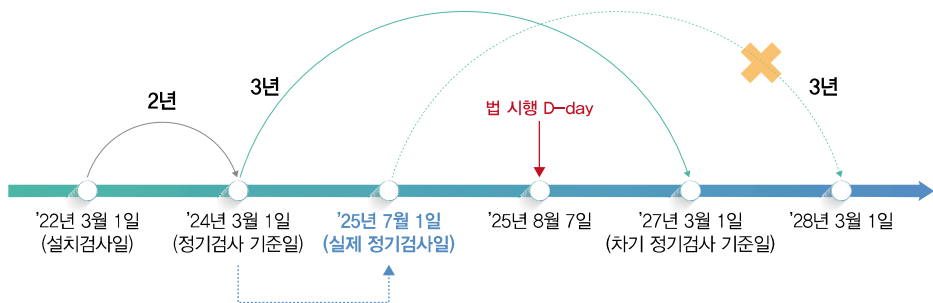
① 차기 정기검사 시기가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영업허가(1년) → 1군 '나' 사업장(2년)



② 검사 기준연도와 검사 수행연도가 다른 경우

영업허가 면제(2년) → 2군 사업장(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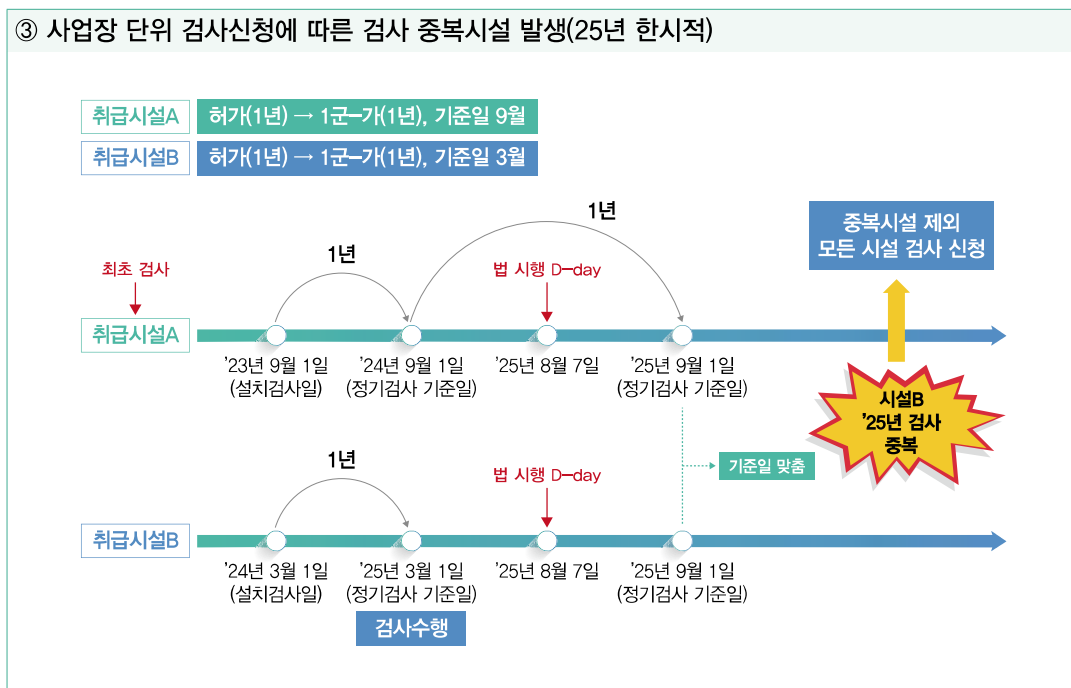
영업허가

검사/진단

기타

2 검사/진단

③ 사업장 단위 검사신청에 따른 검사 중복시절 발생(25년 한시적)





참고

사업장 구분(1군, 2군, 면제) 및 위험도(가, 나, 다)에 따른 시설검사 주기

영업 허가 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설검사				관리자 선임				
	위험도 구분	서면 점검	현장 점검	특별 점검	설치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안전 진단	기술 인력	관리자			
										책임자	점검원		
상위 규정수량	허가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가	5년	점검	검사	1년	검사	4년	1명 이상	1명	취급량 종사자 수 비례	
			나				1년						8년
			다				3년						12년
하위 규정수량	가												
최하위 규정수량	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4년		면제	면제	구분없이 1명			
		면제						면제		면제			

*시약판매업 및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영업신고

영업허가

검사/진단

기타

2 검사/진단

참고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

[사업장 구분(1군, 2군, 면제) 및 위험도(가, 나, 다)에 따른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분		정기검사 주기	안전진단 주기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위험도 "가"	1년 마다	예) 4년 마다
	위험도 "나"	2년 마다	예) 8년 마다
	위험도 "다"		
상위 규정 수량(UT)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위험도 "가"	3년 마다	예) 12년 마다
	위험도 "나"		
	위험도 "다"		
하위 규정 수량(LT)			
면제 사업장		4년 마다	면제
최하위 규정 수량(LLT)			
정기검사 등의 면제 및 운반시설		운반하는 물질 및 운반시설의 형태에 따라 1~3년 주기	면제

* 연구실, 학교 기계내장물질 등은 설치/정기/수시검사 면제
* 인체만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은 정기검사 면제
* 최대보유량이 LLT 미만인 경우 설치/정기검사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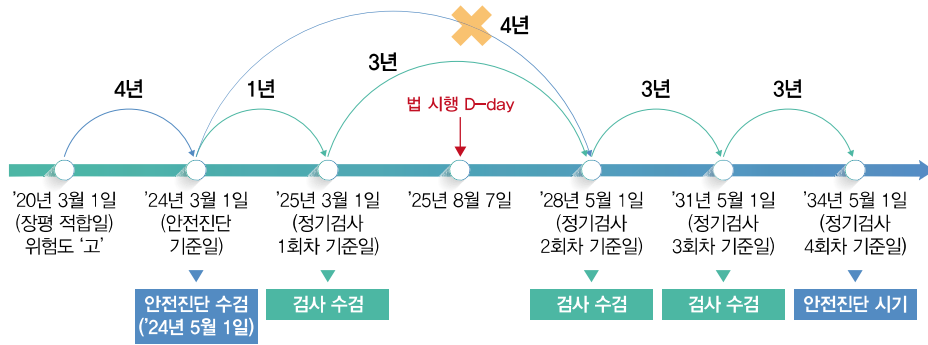
안전진단 주기는 단순히 "정기검사 주기 x4"가 아닌
인센티브 적용 등에 의한 정기검사 시점 고려 필요



[안전진단 개정주기 적용시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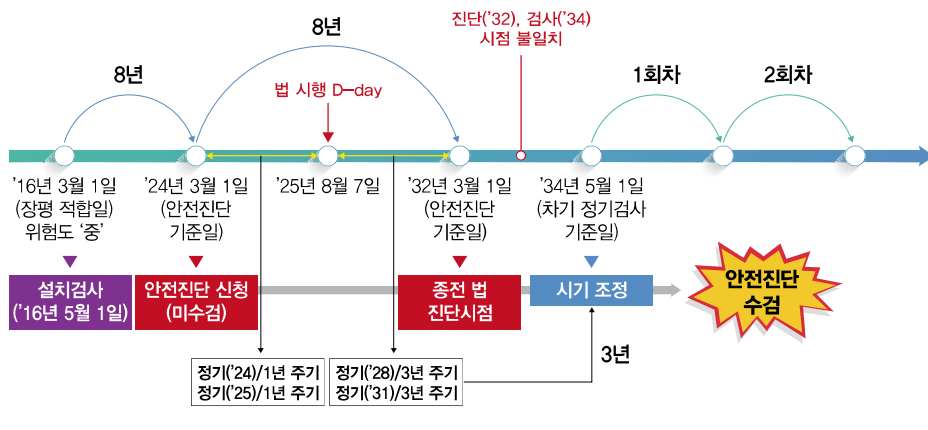
① 법 시행 이전 안전진단 완료

검사	영업허가(1년) → 2군 사업장(3년)
진단	장평 '고'(4년) → 2군 사업장(4회차)



② 법 시행 이전 안전진단 미완료

검사	영업허가(1년) → 2군 사업장(3년)
진단	장평 '중'(8년) → 2군 사업장(4회차)



영업허가

검사/진단

기타

2 검사/진단

③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상향되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시기

장평(“중” 위험도) → 장평(“고” 위험도), 1군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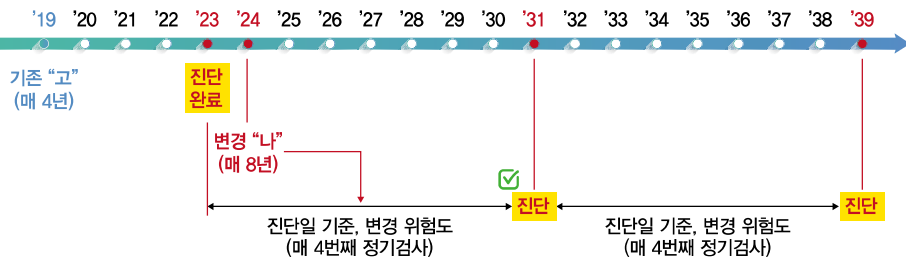


기존 위험도(“중”, 26년)과 변경된 위험도(“고”, 24년)에 따라 선정된 주기 중 더 도래하는 주기(24년, 이후 4년 주기)에 안전진단 수행*

*인센티브 적용X를 가정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안전진단 수검)

장평(“고” 위험도) → 회관서(“나” 위험도), 1군



직전 진단일 기준(23년)으로 회관서 상 위험도(“나”, 8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⑤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안전진단 미수검)

장평(“중” 위험도) → 회관서(“가” 위험도)



1.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평 통보일(20년 기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 위험도(“가”, 4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24년)

3. 주요 Q&A

3 기타

(취급기준, 배출저감계획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등)





3 기타 (취급기준, 배출저감계획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등)

3-1. 취급기준

질의 1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는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답변 1

- 해당 유해화학물질 1)운반자· 2)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3-1)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3-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3-2번 항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교육(16시간/2년)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1), 2), 3) 중 1인이 1), 2)에 해당하는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소 2인이 참여할 수 있으나 중복 업무 수행자는 상위 1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운반자이면서 작업자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과정 이수)

질의 2 저장시설의 정의 개정으로 일부 서비스 탱크도 저장시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위공장 간 이송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2

- “제조·사용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시설로부터 일부 이송하여 체류하는 서비스 탱크”는 저장시설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단위 공장으로부터의 혹은 단위공장으로의 이송을 위한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탱크는 저장시설로 구분됩니다.
- 단위공장 간 이송이란 단위공장간 물질의 입출하를 의미합니다.



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반기준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운반시설	그밖의 시설 (사회배려이송시설)	설치기준	관리기준	그밖의 기준 (종전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조건 및 물질 특성을 고려한 구조 및 재료 적용 • 재어설비는 시설의 정상 조건 유지될 구조 적용 • 직접 및 원격 관리 • 유·누출사고 예방성비확보 • 화원사고예방 관리 계획서 연장보관, 해당 안전관리 계획 준수 	<p>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설비 설치 • 물질특성에 적합한 배출 설비 확보 • 부식 및 손상에 적합한 재질 적용 • 유·누출검지 경보설비 및 긴급차단설비 설치(기계 또는 액체) • 방류터, 방지턱 등 침수설비 설치(액체) • 하천·도랑 유입 방지용 차단시설 및 침수설비 • 긴급세척시설 및 개인보호 장구 비치 <p>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보관시설 관리기준 중 8가지 중 8가지 적용(신호반응 성물질관리 미적용) 	<p>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용 시설 설치기준(7가지)과 동일 • 저장설비 회고 사용압력 이하가 되도록 안전장치 설치 • 저장·보관시설 바닥은 불합투 성재질 적용 <p>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물 적정 처리 • 자연발화성 물질 등 공기 비점속 관리 • 금속부식성 물질 부식 및 손상관리 • 자기반온성 물질 관리 • 인화성물질 정화원 관리 • 유해화학물질 확산 최소화 • 필요최소양만 취급 • 신호반응성 물질 분리 • 기타 사고 예방 조치 	<p>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에 적합한 설계 제작된 차량 • 차고지는 유·누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소에 확보 <p>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장소에서 적재 또는 하역 • 운반시설에 적재된 운반 용기는 고정 • 안전한 곳에 주·정차 • 기타 사고 예방 조치 <p>세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확물질 안전권 고시(9개) <p>유지보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종류·일정, 규모, 사용자, 유해 화학물질명, 작업관리자 성명·연락처, 등 표지판 게시(별표5비고 제2호) 	<p>설치기준</p> <p>사고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조건 및 물질 특성을 고려한 구조 및 재료 적용 • 재어설비는 시설의 정상 조건 유지될 구조 적용 • 직접 및 원격 관리 • 배관 및 그 지지물 등이 외부요인으로 파손 및 부식되지 않게 설치 • 배관 및 그 지지물 등이 외부요인으로 파손 및 부식되지 않게 설치 • 유·누출검지경보설비 및 긴급차단 설비 설치(기계 또는 액체) • 방류터, 방지턱 등 침수설비 설치(액체) • 하천·도랑 유입 방지용 차단시설 및 침수설비 • 신호반응성 물질 분리 <p>사고저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누출검지경보설비 및 긴급차단 설비 설치(기계 또는 액체) <p>피해저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장구 비치 • 인체 금안성 및 사대비물질 취급시설 • 기타 사고예방 조치 	<p>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발화성 물질 등 공기 비점속 관리 • 자기반온성 물질 관리 • 인화성 물질 정화원 관리 • 지정된 장소에서 적재 또는 하역 • 운반시설에 적재된 운반 용기는 고정 • 안전한 곳에 주·정차 • 필요 최소양만 취급 <p>그밖의 기준 (종전 일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종류일정, 시설명, 규모, 사용자, 유해 화학물질명, 작업관리자 성명·연락처 등 표지판 게시 • 관계 표시 • 화원사고예방 관리 계획서 연장 보관, 해당 안전관리 계획 준수 <p>세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확물질 안전권 고시(9개~5개) 		



보안기준

검사/진단

기타



3 기타 (취급기준, 배출저감계획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등)

3-2. 배출저감계획서

질의 3 당사는 2023년에 A물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B물질을 1톤 이상 사용하여 2026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2026년에 B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후, 2028년에 A물질에 대한 5년 재제출을 하면 되나요?

- 답변 3**
- A, B물질 개별 제출 · 관리 가능하며, A, B물질을 통합하여 제출 · 관리도 가능합니다.
 - A, B물질 통합 제출의 시기는 사업장 편이에 따라 2026년 또는 2028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관리) A, B물질의 최초 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재제출
 - A물질 : 최초 제출 2023년 → 5년 재제출 2028년 → 5년 재제출 2033년
 - B물질 : 최초 제출 2026년 → 5년 재제출 2031년 → 5년 재제출 2036년
 - (2026년 통합) 2026년에 A, B물질을 통합하여 제출
 - A+B물질 통합 제출 2026년(2개년 계획) → 5년 재제출 2028년 → 5년 재제출 2033년
 - 단, 통합 제출 시 저감목표는 A물질 저감계획 5년차 시점인 2027년까지의 계획을 수립
 - (2028년 통합) 2026년에 B물질 먼저 제출 후, 2028년에 A, B물질 통합 제출
 - B물질 최초 제출 2026년(5개년 계획) → A+B물질 통합 제출 2028년 → 5년재제출 2033년
 - 단, 2028년 통합 제출 시 이행실적은 A물질은 2023~2027년, B물질은 2026~2027년에 대하여 작성



3-2. 배출저감계획서

질의 4 당사는 2023년 C물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사업 확장으로 공정라인이 추가되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의 2023~2027년까지의 목표배출량과 저감방안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변경 제출이 가능할까요?

- 답변 4**
- 배출저감계획서 적합 이후 사업장의 기준연도 배출량 정보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정 추가, 저감방안, 목표배출량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변경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원장에게 변경내용과 사유를 포함하여 변경 요청을 해야합니다.
 - 변경 제출 요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검토하여 사업장에게 변경 제출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변경 제출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변경 제출(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하면 됩니다.



3 기타 (취급기준, 배출저감계획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등)

3-2. 배출저감계획서

질의 5 당사의 경우, 1~4년차의 배출저감 이행 실적은 다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5년차 최종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원장이 인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 답변 5**
- 공정 개선, 대체 물질 사용 등 배출물질 저감활동을 통해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의 경우는 인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 다만, 5년차의 목표배출량을 달성한 경우라도 단순 취급량 감소로 달성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3. 사고대비물질

질의 6 신규지정되는 사고대비물질(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로 인해 사업장에서 추가되거나 바뀌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6 · 현재도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설기준 등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화관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9]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타 법령 중 유의사항

-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제2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 시설 중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9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신규지정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

화학물질명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함량 (%이상)	최하위 규정수량(톤)	하위 규정수량(톤)	상위 규정수량(톤)
자일렌	유해화학물질 제외	인화성액체 구분3	85	0.4	20	400
스티렌	만성유해성 (10%)	인화성액체 구분3	25	0.125	5	200
1,3-부타디엔	만성유해성 (0.1%)	인화성가스 구분1	25	0.05	2	50



3 기타 (취급기준, 배출저감계획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등)

3-3. 사고대비물질

질의 7 신규 지정되는 사고대비물질(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7**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현재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 물질을 상위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 환경 책임보험부(1670-5420)로 연락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의무가입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이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환경책임보험에 별도로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상위 규정수량 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로 인해 사업장의 배상책임 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보험사 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부(1670-5420)로 연락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4. 규정수량

질의 8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 1]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 수량은 언제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 8 · [별표 1] 은 향후 신규 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이 행정예고 되었을 때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 기준은 [별표 2], [별표 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9 저확산, 용액 표시된 규정수량 적용방법은?

답변 9 · 저확산 표시는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저확산 규정수량을 적용하고, 함량기준은 급성·만성·생태유해성 중 가장 낮은 함량을 적용합니다.

· 용액 표시는 상온·상압 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용액 규정수량을 적용하고, 함량기준은 급성·생태유해성 중 가장 낮은 함량을 적용합니다.



3 기타 (취급기준, 배출저감계획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등)

3-5. 그 외 사항

질의 10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범위에 폐기물도 포함되나요?

- 답변 10**
-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은 제외합니다.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제외합니다.

질의 11 기존 장외 및 위해서 제출업체의 화관법 관리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도 재통보 시기는 언제인지?

- 답변 1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존 장외 적합 사업장의 위험도는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2021. 4. 1.) 부칙 제4조에 의해 기존 장외 적합 판정받은 위험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전원에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장외 적합 사업자의 화관법 관리수준은 화관법민원24 내 “화관법 관리 수준” 시스템에서 사업장의 취급물질, 함유량 및 최대보유량의 현행화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5. 그 외 사항

질의 12 취급 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Code)가 변경되는 경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변경된 유해성 분류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재배포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12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혹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의 부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3 2025.8.7. 규정수량 변경시 이전부터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경과 조치는??

답변 13

- 2025.8.7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규정수량이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이 상향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시 시행일(2025.8.7)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